Commission On Human Rights

당당하게 살기: LGBTQIA+ 권리 이해

뉴욕시에서 실제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으로 차별하는 것은 **불법**입니다. 여기에는 성 표현, 간성인, 겉으로 드러난 성별에 대해 차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 이와 같은 보호 정책은 직장, 학교, 거주지, 공공 장소 등 다양한 곳에서 적용됩니다. 뉴욕시 인권법(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)은 또한 보복, 차별, 괴롭힘,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법 집행관의 프로파일링으로부터 LGBTQIA+ 공동체를 보호합니다.

뉴욕시의 LGBTQIA+ 보호에 관해 모두가 알아야 할 5가지

1. LGBTQIA+ 사람들은 직장, 거주지, 공공 장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이들의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롭히거나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2. 고용주는 성 고정 관념을 바탕으로 복장 기준이나 규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.
3. 이들은 선호하는 이름 및 대명사로 불리거나 성 정체성에 일치하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성 정체성의 '증거'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.
4. 임대주는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때문에 이들을 다르게 대할 수 없습니다. 즉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임대를 거부하거나, 더 많이 청구하거나, 서비스를 제한하거나,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또한 이들은 임대주, 직원,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.
5. 고용주는 직원의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복지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.

차별 신고

22 Reade Street
New York, NY 10007

212-416-0197

www.NYC.gov/CCHR
@NYCCHR